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14)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2
 [참고자료]	 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3. 21.
3.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회원조합장과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 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보은 인사, 코드 인사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이를 감사 및 시정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도 단 한차례 응하지 않으며 껌껌이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5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개정안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 이상으로 하고, 위원 위촉 시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영상녹화물 녹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임.

현행	박덕흠의원안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 ----- 두고, 인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1. ~ 4. (현행과 같음)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신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기

현행	박덕흠의원안
<신설> <신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인사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 및 영상녹화물을 작성·녹화하여야 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인사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제5항에 따라 기록된 회의록 및 영상녹화물 제출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 심사 및 운영-----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회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의결정족수 규정 및 회의록 작성·제출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협동조합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음.

2) 농협중앙회

협동조합의 회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

가 있으며, 타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의결정족수, 회의록 작성 등 인사 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이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협 인사추천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도록 제도를 개선('21.4월 농협법 개정)한 바 있음.

나. 검토의견

(1)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업전담 대표,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의 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추위'라 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인추위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과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되 인사 수요 발생 시마다 새로 구성하고, 그 밖에 인추위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이하 '정관'이라 함) 제50조의21)에

1) 「농협중앙회정관」 제50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전담대표이사등
2.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
3. 감사위원
4. 조합감사위원장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

서 인추위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규정(이하 ‘인추위규정’이라 함)’에 다시 위임하고 있음.

정관 및 인추위규정에서 인추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정관에서 인추위는 임원의 임기만료²⁾, 사임 등의 사유 발생 시마다 구성하고 그 임기는 위원회 구성 후 추천대상자 선정 시까지로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함.

다음으로, 인추위규정 제11조³⁾에서 위원회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2.29.>

1. 회원조합장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2. 이사가 아닌 조합장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1명
3. 농업인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복수의 상급 농업인단체가 각각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1명
4. 복수의 학계(학회, 연구단체 등을 말한다) 등이 각각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 ③ ~ ⑤ <생략>
- ⑥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이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후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 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의장이 소집한다.
- ⑨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⑪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O 임원별 임기

- 사업전담대표이사등(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2년
-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의 이사: 2년
- 감사위원: 3년
- 조합감사위원장: 3년

3) 제11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사추천위원회 개요 】

구분	내 용		비 고
기능	임원 후보자 추천		법 §125의4① 정관 50의2①
추천 대상	① 전무이사 ② 상호금융대표이사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사외이사) ④ 감사위원 ⑤ 조합감사위원장		
구성	7명	회원조합장 3명: 이사조합장 2, 비이사조합장 1	법 §125의4②
		외부전문가 4명: 농업인단체 추천 1, 학계 등 추천 3	정관 50의2②
운영	사유(임기만료, 사임 등) 발생할 때마다 비상설기구로 운영		정관 50의2⑥ 인추위규정 §4④
임기	위원회 구성 후 추천대상자 선정 시까지		정관 50의2⑦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정관 50의2⑩ 인추위규정 §8
의사록	의사록 작성		인추위규정 §11

최근 3년간 인추위는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각 2회, 2024년도에 3회 구성된 바 있으며, 통상 3일간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 최근 3년 인추위 구성 및 회의 개최현황 】

구 분		위원수	회의 일시 및 기간	추천대상	사 유
2022년	1차	7명	3.4 ~ 3.6(3일간)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임기만료
	2차	7명	5.25 ~ 5.27(3일간)	사외이사 4, 감사위원 5	임기만료
2023년	1차	7명	5.24 ~ 5.26 (3일간)	사외이사 4	임기만료 3, 사임 1
	2차	7명	10.25 ~ 10.27(3일간)	사외이사 1	사임 1
2024년	1차	7명	2.14 ~ 2.16(3일간)	사외이사 1	사임
	2차	7명	3.6 ~ 3.8(3일간)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임기만료
	3차	7명	5.22 ~ 5.24(3일간)	사외이사 4	임기만료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5.24)

한편, 임원의 선임은 인추위가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회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총회)가 의결함으로써 최종 확정됨.⁴⁾ 다만, 감사위원은 이사회 의결 없이 인추위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확정됨.

이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임⁵⁾.

【 인추위 추천 임원 선임 절차 】

대 상	절 차				관련 조문	
사업전담대표이사등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의 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회 의결	▶	대의원회 의결	농협법 §130② 농협법 §130④ 농협법 §144①
감사위원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		대의원회 의결	농협법 §129③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5.24)

- 4)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5)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4항·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제3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43조제5항**, <중 략>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이사회)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은 앞서 살펴본 인추위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① 인추위 위원 위촉 시 지역, 연령 등 고려, ② 의결정족수 강화, ③ 회의록 작성 및 영상녹화물 녹화 의무와 해당 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농협중앙회 임원 추천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 규정 및 개정안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법률)
	법률	정관	규정	
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	-	-	-	지역, 연령 등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재적위원 2/3 이상
회의록 작성	-	-	의사록 의무 작성	의무 부여
영상녹화물 작성	-	-	-	
국회 요구 시 제출	-	-	-	

(2) 인추위 구성 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먼저, 인추위 위원 위촉 시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 및 정관에 따르면 현재 인추위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인 이사 2명, 이사가 아닌 조합장 1명, 농업인단체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1명, 학계 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로 위원의 요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위원 위촉 시 위원들의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인추위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실제 최근 세 차례 인추위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조합장인 위원의 위촉에 있어 지역별 안배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원의 연령은 5~60대가 대부분임.

【 최근 인추위 위원 구성 현황 】

구 분	위원 수	위원 현황		
		구 성	연령	지역
2024-1차*	7명	이사조합장 2	52	충남
			60	전남
		비이사조합장 2	61	경북
			63	경기
		농업인단체 추천 1	64	-
		학계 등 추천 2	57	-
			66	-
2024-2차	7명	이사조합장 2	51	전북
			60	충남
		비이사조합장 2	56	경북
			59	경남
		농업인단체 추천 1	64	-
		학계 등 추천 2	57	-
			66	-
2024-3차	7명	이사조합장 2	52	제주
			53	경북
		비이사조합장 1	50	대구
		농업인단체 추천 1	60	-
			64	-
		학계 등 추천 3	66	-
			66	-

* 개정 농협법('21.4.13 개정, '24.3.7 시행) 이전에는 조합장인 위원수가 4인이었음.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5.24)

참고로, 2025년 5월 기준으로 조합장의 연령은 5~70대에 집중되어 있음.

【 연령별 조합장 현황('25.5 기준) 】

구분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품목축협	인삼협	합계
40대	5	2	-	-	2	9
50대	119	19	6	2	4	150
60대	653	71	29	17	4	774
70대	132	23	7	4	1	167
80대	2	-	2	-	-	4
직무대행	5	1	1	-	-	7
합계	916	116	45	23	11	1,111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5.24)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역 조합장 외에 민간의 외부전문가 추천 시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비교적 소수인 7인의 위원 위촉 시 지역, 연령 등 타 요소를 고려하도록 할 경우 인사추천 관련 전문성 보유 여부에 대한 고려는 약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대하여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인추위 구성 노력 의무를 부여할 경우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있을 것임.

(2) 인추위 의결정족수 강화에 대한 검토

다음으로, 의결정족수 강화와 관련하여 타 입법례 및 의결사안의 중대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행 정관은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추위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를 2/3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통상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반영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로 정하고 있음⁶⁾.

현재 농협뿐 아니라 타 협동조합 등도 인추위의 추천대상 및 위원 구성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의결정족수는 정관 등에서 과반수로 정하고 있음.

【 협동조합의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비교 】

구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추천대상	• 전무이사 • 상호금융대표이사 등	• 감사위원 • 경제사업대표이사 등	• 감사위원 • 사업대표이사 등	• 전문이사	• 상근이사 • 감사위원 등
위원구성	• 회원조합장 3명 • 외부전문가 4명	• 회원조합장 3명 • 외부전문가 2명	• 회원조합장 3명 • 외부전문가 2명	• 전문이사 2명 • 회원 이사장 2명 • 외부전문가 3명	• 금고이사장 2명 • 외부전문가 4명
정족수	과반수(정관)	과반수(정관)	과반수(정관)	과반수(규정)	과반수(정관)

한편,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기업 구조개선법」 등은 각각 검찰총장 후보, 공수처장 후보, 공기업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

6)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4」, p.419

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법률에서 규정⁷⁾하고 있음.

이 중 「검찰청법」, 「공기업 구조개선법」 등은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서 의결정족수를 유일하게 재적위원 2/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타 기관 의결정족수 비교 】

구분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기업 구조개선법
근거조항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추천대상	검찰총장	공수처장	사장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재적위원 2/3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

살펴본 바와 같이 의결정족수를 강화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입법례가 있으나, 농협은 자율적 활동을 보장받는 자조조직(自助組織)⁸⁾인 점, 농협의 임원 보다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이나 공기업 사장 후보 등의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고 있는

7)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기업 구조개선법**」 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①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상기업별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8)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인추위의 임원후보 추천은 임원 선임의 최초 단계로서, 임원의 최종 선임을 결정하는 대의원회(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하여 규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의원회에서의 임원 선출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대의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하고 있는 경우는 정관변경이나 회원의 제명에 한하고 있는 점⁹⁾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의사록 작성 등 및 국회 제출 의무 등에 대한 검토

마지막으로, 회의록 작성 및 영상녹화물 녹화 의무와 해당 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인추위규정 제11조¹⁰⁾는 위원회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인추위의 의사록을 공개하거나 국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

9) 「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10) 제11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원 추천 과정에 관한 의사록이 외부로 공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음.

개정안은 인추위규정에 따른 의사록(회의록)의 작성 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영상녹화물의 녹화의무도 함께 규정하면서, 국가 회의록 및 영상녹화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타 협동조합 등을 살펴보면, 농협과 같이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영상녹화물 녹화에 관한 사항 및 국회 요구 시 제출에 관하여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음.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¹¹⁾에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특정 기관의 회의체에 대하여 영상녹화물 녹화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국회의 경우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¹²⁾

1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25조·제2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 ⑥ (생략)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후보자 추천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국회법」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 의사록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 등 관련 입법례 】

구 분	의사록 작성 의무	영상녹화물 녹화 의무	국회 요구시 제출 의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내부 규정에 규정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에 규정	×	공개 의무

먼저, 인추위 회의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타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에 비해 농협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의사록의 국회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유사하게 국회의 요구에 따른 회의록 제출이 이루어질 경우 인추위 임원 후보 추천 의사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할 경우 공공기관이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¹³⁾과 상충될

의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

여지가 있어 보임.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14)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임.

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각 목 생략>.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후략>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3. <생략>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이에 농협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임원 선임과 관련한 회의록은 특정 인물에 대한 민감한 정보와 개별 위원의 주관적인 발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 공개 시 자유로운 논의를 위축시켜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함¹⁵⁾.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15)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524

- (개요)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관련 이사회 속기록 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 (요지) 비록 그 사장 임명 절차가 끝나 이미 사장이 취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속기록에 담긴 정보는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2019-22549

- (개요)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심의 관련 교육부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 속기록 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 (요지) 인사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해당 인물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내용은 총장 임용후보자가 공적인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후보자 개인에 관한 민감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향후 총장 후보자로 제청된 대상자들이 후보 제청을 거절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특성상 개별 참석 위원의 발언 내용이 모두 공개됨으로써 총장 임용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위원들이 향후 인사위원회 토론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적극적 참여를 꺼리게 되는 등 피청구인의 인사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에서 발언자 성명 등을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우려가 해소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실제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한 위원의 실질적인 발언 내용을 제외한 회의 일시 등 개요나 회의 결과만이 공개되고 있음¹⁶⁾.

따라서 인추위 회의록의 국회 제출 여부는 농협중앙회 임원 추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가치와 회의록 전면 제출(공개)이 인추위의 공정한 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5

16) 공공기관이 공개한 인추위 회의록의 예시는 참고자료 참조

참 고 자 료

참고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례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2024. 11.

한국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주요 내용

□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4. 11. 22(금) 13:30
- 개최장소 : 서울 LNG 비즈니스 허브
- 참석위원 : 5명(비상임이사 3명, 외부위원 2명)
- 논의사항 : 응모자에 대한 서류심사

□ 회의결과

- 최종후보자를 5배수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서류심사 평가표는 비공개
- 서류심사 결과
 - 비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에 추천할 비상임이사 후보자 5명 확정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2024. 9. 3.(화)

KOTRA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요 】

- 일 시 : 2024. 9. 3.(화) 14:00 ~ 16:30
- 장 소 : 소피텔 엠버서더 서울(잠실) 3층 바스티유 룸
- 참 석 : 8명
 - 비상임이사(5명) : AAA, BBB, CCC, DDD, EEE
 - 이사회 선임위원(3명) : FFF, GGG, HHH
- 안 건 : 후보자 모집방법, 후보자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회의록 공개 범위 및 향후 일정 결정 등

□ 주요 발언 내용

○ 사무국장

- KOTRA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의에 앞서 금일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
- 위원님들께서는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 바랍니다.

○ 위원장

- KOTRA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의사봉 3회 타봉)

○ 사무국장

- 면접 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면접 대상자는 서류 심사 합격자에 대해 성명 가나다 순으로 면접을 실시하겠습니다.
- 면접은 응시자별 자기소개 5분,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함.

(면접 진행)

○ 위원장

- 면접은 약 25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5분간 자기소개 후 20분간 면접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장 경영계약안 동의 확인

○ 사무국장

- 평가 결과가 집계되었음.
-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평가 점수가 집계표상의 점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 산업부 장관에게 최종 추천할 인원에 대해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 김승준 후보자의 경우, 산업부 장관에게 최종 추천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아님.

○ 위원장

- 면접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KOTRA 사장 최종 후보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하겠음.

○ 사무국장

- 결정해주신 대로 추천해주신 인원에 대해 KOTRA 사장 최종 추천절차를 진행하겠음.

○ 위원장

- 이상으로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를 폐회하겠음. (의사봉 3회 타봉)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2024. 12. 12.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4. 12. 12.(목) 14:00
- 장 소 : LH 서울지역본부
- 참석위원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7명 참석

☐ 의결사항

- 비상임이사 직위 응모자에 대하여 서류심사하여 추천 후보자 결정
- 비상임이사 직위 추천 후보자 수 : 4명

☐ 심의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 직위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함.

직 위	추천대상자 (추천순서 : 가나다순)
비상임이사	4명